

2012년 8월 25일 시행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①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2. 8. 25.(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2. 8. 27.(월) 12:00 ~ 2012. 8. 29.(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2. 9. 10.(월)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②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④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 ⑤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파업에 이르기 전에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상 헌법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상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문 2】 알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구치소의 미결수용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등을 삭제하는 것은 알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 ②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 ③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알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으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능의 조치를 강제하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3】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고소 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
- 라. 경찰서장이 옥회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위 반려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이 위 취소소송을 취하한 다음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마. 일회적인 선거방송토론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의 경우, 청구인에게 사실상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정지절차나 초청대상 후보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행정소송에서의 중국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 ① 다, 라, 마 ② 가, 마 ③ 라, 마
- ④ 가, 라, 마 ⑤ 라

【문 4】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
- 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 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나,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④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 ⑤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는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형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 6】 재판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교원징계처분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수행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위 수행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그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수행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 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7】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적·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
- 나.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 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라. 외국인은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마. 국회의장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 내부의 조직을 정당하게 구성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가, 라
- ④ 다, 마 ⑤ 나, 다

【문 8】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 ② 행정처분에 대한 재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근거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③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청구인이 당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범죄사실의 신고가 있는 후 고소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의 여부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형법 제156조 자체가 지닌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문 9】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 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범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범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 라.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판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마. 당해 범죄의 고발인도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 ④ 가, 다, 라, 마 ⑤ 나, 다

【문10】 현행법상 대법원이 單審(始審이며 終審)으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②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③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친 후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문11】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급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②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 ④ 구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⑤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문12】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9조에서 명문화되었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헌법에서 신설된 후, 현행 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소제기 전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위 ③항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 ⑤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문13】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거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④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장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자가 외국영화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이 초래되고, 국내 영화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영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둔 것으로, 이를 들어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문14】 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 ②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결정은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 ③ 분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 ④ 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사법시험의 합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행되어 그 적용의 시기도 매우 근접하였으므로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사법시험 1차시험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문15】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육군의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②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의 제조·수입 등의 방법으로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③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있어서 그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이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분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⑤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제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16】 인사청문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②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改選)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국회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④ 국회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으로 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어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수 없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문17】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 ②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두었고, 1954년 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으나, 1960년 헌법은 국무총리제를 부활시켰으며, 그 후 1962년 헌법은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다.
- ③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국회가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해임건의의 결의를 한 후 대통령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 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문18】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 ②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그로 하여금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의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간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직접 적용될 수 없다.
- ⑤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문19】 국가기관간의 권한 분쟁이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의 경우 그 권한 및 존립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②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가 있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
- ④ 국회의 구성원인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문20】 ‘국회 동의권’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대통령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④ 대통령이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통령은 일반사면을 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21】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로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22】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 등을 규제하는 것은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므로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한다.
- ④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없게 하는 것과 일간신문과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신문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구독자가 많은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통제하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하고 부적절하게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23】 다음 중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문24】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②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 ③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5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 ④ 국가는 성질상 집행불능의 상태가 생길 수 없어 국가에 대한 가집행을 불허하더라도 집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 ⑤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용을 수용자라는 신분에서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문25】 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보면서, 교수나 교수회는 그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다.
- ② 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③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④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 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문2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 ②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문27】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 ③ 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었다.

【문28】 입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경우 그 법률안은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을 발생한다.
- 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발의의원이 필요하다.

【문29】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③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문30】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정부에 한정되고,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심판의 변론은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행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 ④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은 해산되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 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문31】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하여도 단수면허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문32】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 ③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되,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자기국회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 ⑤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33】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그의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그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④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문34】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인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므로, 해당 집회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한 경우라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②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이므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 ③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다른 범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④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결국 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영하려는 약사 개인들과 이러한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다.
- ⑤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집회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문3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나.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지만,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할 필요는 없다.
- 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라.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마.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 ① 가, 나, 라 ② 라, 마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⑤ 가, 나, 마

【문3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도시 내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등록세를 증가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③ 납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 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④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조세관행준중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 ⑤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장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문37】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③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범위는 동일하다.

【문38】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개인의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 ② 입법자는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 학생부나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 ③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자기가 졸업한 사범대학이 있는 지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은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⑤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문39】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아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수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에게 범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자체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보안관찰처분은 그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절반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40】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②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피소추자는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 ③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 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문 1】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 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 ④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⑤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한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문 2】 공유(共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② 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④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 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 ③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④ 낙찰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문 4】 무권대리행위의 주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중원이 중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중중이 사후에 그 중중원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주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주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③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 5】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을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③ 갑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가 이중매매임을 잘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문 6】 변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 ②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③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 ④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구두제공의 방법으로도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 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와 대위변제자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문 7】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 ②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지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본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순한 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⑤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 8】 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⑤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문 9】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② 임대차계약 후 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은,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반하는 임대차기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이다.
- ③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인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문10】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②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민법 제39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문11】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제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④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문12】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 ②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③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장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장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다.
- 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중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문1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명의수탁자를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문14】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5】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 ②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이 된다.

【문16】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③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문17】 소멸시효(消滅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손해발생사실을 안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④ 부동산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8】 공탁(供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만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문19】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므로, 위 수증자(受贈者)가 제3자에게 위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증자에 대하여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문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④ 구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그와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
- ⑤ 당사자가 실제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설정계약의 합의가 있어 구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취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문21】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백화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면, 위 주유기는 위 건물에 부속시킨 종물이다.
-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종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도 종물에 해당되어 부동산의 낙찰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낙찰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낙찰인에게 이전된다.
- ⑤ 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된 정화조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 보다는 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22】 사실혼(事實婚)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 소정의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사실혼관계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 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생존 당사자는 제소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문23】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②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관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④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문2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②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지급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아니므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25】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 ③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 ④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약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문26】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채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도 포함된다.
-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문27】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물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무기등기가 이루어지면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8】 친권(親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대리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성년인 자(子)와 미성년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부모가 할 때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④ 무상(無償)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⑤ 모(母)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父)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와 같이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실령모가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

【문2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행하는 심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문30】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④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나,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31】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
- ②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③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 ⑤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문32】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 ②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③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도 준용되므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문33】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후일 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양도하여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수인이 대지에 설정한 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지당권설정 당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지당권자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한 바가 없다면 양도인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토지에 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⑤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문34】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경우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 양수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따라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문35】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③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낙찰 받은 경우에, 무효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에 의해 위 낙찰은 유효하다.
- ④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36】 다음 중 무효인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받은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 ㉡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첩에게 그동안의 노력 등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위 제3자 명의로 된 대출약정
-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이를 추인한 경우
- ㉤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위 남편 명의로 된 대출약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 다음 중 민법상 소급효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 무효행위의 주인, ㉡ 혼인의 취소, ㉢ 상속재산의 분할
- ㉣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 취득시효의 완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8】 유언(遺言)의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민법에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②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설령 그 이후에 발급받아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 ③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그 증인이 되지 못한다.
-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문3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丙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후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담보목적물을 乙에게 가장 양도한 후 乙이 丙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丙
-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인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 채무인수(債務引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③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자기와 구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입찰방해죄의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2】 다음 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복권까지 받았다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누범이 되지 않는다.
- ② 상습절도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더라도 누범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④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 3】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②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갑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경우, 갑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범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문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수입자동차가 장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규 등록한 경우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만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6】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도 형법 제370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된다.
- ②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 ④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
- ⑤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경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7】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8】 동산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채기를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1,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채기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은 톱밥진동선별기의 소유자인데, A, B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위 기계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위 ㉠의 경우에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9】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② 살인죄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국내법원에서 감경 없이 다시 살인죄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위 신설규정의 시행 후에 걸쳐 행하여진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면 수수한 뇌물수수액 전체를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필리핀국에서는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우리나라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문10】 범조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범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갖추어야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는 특별관계에 있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범조경합의 관계이다.
- ④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범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범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11】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면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⑤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②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고 위 2죄는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 ④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⑤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으로 감금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 ㉡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전과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4】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농협 판매부장인 A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으로 백미를 외상 판매하다 그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 A가 농협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백미외상거래에 대해서도 부임 직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 거래를 지속하였다면 농협 판매부장 부임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백미외상거래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 B가 갑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갑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B가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갑 회사의 퇴사 이후의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 C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강도범행을 공모하고 C는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는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 ㉣ D가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D는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D는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5】 다음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의 법정형보다 구법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면 구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를 2죄로 분리하여 각각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뒤늦게 기소된 제1범죄행위는 제2범죄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의 확정판결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 나중에 기소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 기소된 사건과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문16】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에 대한 범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약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약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범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 ② 제3자로 하여금 해약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든 해약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자가 직접 해약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몸에 연소성이 높은 물질을 바르고 라이터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약 1시간가량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여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⑤ 협박죄는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때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문17】 살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③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살인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강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⑤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문18】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기 도박의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갑이 일제시대 사정(査定)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의 상속인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에 그쳐서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해제하여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더라도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19】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한 갑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갑죄를 범할 당시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갑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할 수는 없다.
- ㉣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여 금고형으로 처단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갑죄와 을죄 사이의 관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은 2007. 6. 11. 갑죄를, 2007. 7. 24. 을죄를 범하였다.
- ㉡ 피고인에게 A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제1판결)이 2002. 10. 10. 확정된 전과와 B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판결(제2판결)이 2007. 7. 14. 확정된 전과가 있다.
- ㉢ B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이다.

- ①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모두 제1판결 확정 후의 범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아니지만 모두 제1판결 확정 후의 범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아니므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⑤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2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학생들의 토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나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도 포함한다.
- 미진 :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 정현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 은정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되어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나,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① 미나와 미진은 옳고, 정현은 옳지 않다.
- ② 미진과 정현은 옳고, 은정은 옳지 않다.
- ③ 정현과 은정은 옳고, 미나는 옳지 않다.
- ④ 미나는 옳고, 은정은 옳지 않다.
- ⑤ 미진은 옳지 않고, 정현은 옳다.

【문22】 감금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죄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고,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자발적으로 가거나 그 장소가 잠겨있지 않아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 ②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행위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는 강간미수죄와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한다.

【문23】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여야 한다.
- ㉢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란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강제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4】 다음 중 불가법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 여부)
-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후행 매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넘는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후행 담보권설정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배임죄 성립 여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문25】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혹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위 ㉡의 경우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므로, 날치기 수범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므로 음향(音響)은 유형력에 포함될 수 없다.
- ㉡ 다방 종업원들의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 중 1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범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 외국사절의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숙소에서 나오는 외국사절을 태운 승용차를 발견하고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향하여 연이어 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2개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넷트에 맞힌 행위는 외국사절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바닥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동거하는 이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이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소재산인 저금통을 친구 집에 숨겨 놓은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의 돈을 절취하였다가 그 후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9】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
- ㉡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 ㉣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속 수행하는 업무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 ㉥ 종종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종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법 40문】

①책형

【문30】 다음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A가 현금카드 소유자인 B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예금 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5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1】 절도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그 집에 사람이 있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갔더라도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상습절도미수 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할 수 있다.
- ④ 절도죄에서 친족상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된다.
- 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2】 소송사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A의 행위는 소송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⑤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 ㉡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 ②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③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④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⑤ 이른바 편면적 중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문35】 다음 중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내란목적의 살인죄(형법 제88조)
- ㉡ 폭발물사용죄(형법 제119조)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 ㉣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 ㉤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제1항)
- ㉥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36】 다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분배하였다더라도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다.
-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甲(男子)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乙(女子)을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다면,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8】 주거침입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②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타인의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체의 전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
- ④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3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40】 다음 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 ㉡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 토지대장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후불식 전화카드의 경우 전화카드 전체가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문 지문대조표는,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12년 8월 25일 시행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40문), 민법(40문), 형법(40문)
②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2. 8. 25.(토) 15: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2. 8. 27.(월) 12:00 ~ 2012. 8. 29.(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2. 9. 10.(월)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
- 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 2】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고소 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
- 라. 경찰서장이 옥회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위 반려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이 위 취소소송을 취하한 다음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마. 일회적인 선거방송토론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의 경우, 청구인에게 사실상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정지절차나 초청대상 후보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행정소송에서의 중국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 ① 다, 라, 마 ② 가, 마 ③ 라, 마
- ④ 가, 라, 마 ⑤ 라

【문 3】 알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구치소의 미결수용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등을 삭제하는 것은 알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 ②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 ③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알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으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능의 조치를 강제하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4】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②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④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 ⑤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파업에 이르기 전에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상 헌법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상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문 5】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 ② 행정처분에 대한 재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의 근거 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근거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③ 당해 사건이 제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제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제심청구가 적법하고 제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청구인이 당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범죄사실의 신고가 있을 후 고소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의 여부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형법 제156조 자체가 지닌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문 6】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적·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

나.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라. 외국인은 기본권의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마. 국회의장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 내부의 조직을 정당하게 구성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가, 라
- ④ 다, 마 ⑤ 나, 다

【문 7】 재판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된 것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제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교원징계처분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수행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위 수행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그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형벌의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수행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 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8】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나,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④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 ⑤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는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형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 9】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9조에서 명문화 되었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헌법에서 신설된 후, 현행 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소제기 전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위 ③항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 ⑤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도 재소비용 의무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문10】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급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②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 ④ 구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⑤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문11】 현행헌법 대법원이 單審(始審이며 終審)으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②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③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친 후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문12】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라.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판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당해 범죄의 고발인도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 ④ 가, 다, 라, 마 ⑤ 나, 다

【문13】 인사청문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②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改選)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국회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④ 국회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으로 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어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수 없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문14】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 ② 제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제까지 두었고, 1954년 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으나, 1960년 헌법은 국무총리제를 부활시켰으며, 그 후 1962년 헌법은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다.
- ③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국회가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해임건의의 결의를 한 후 대통령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 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문15】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육군의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②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의 제조·수입 등의 방법으로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③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있어서 그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이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분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⑤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16】 헌법재판의 가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치분규정을 두고 있다.
- ②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치분결정은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 ③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가치분을 인용한 뒤 중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치분을 인용할 수 있다.
- ④ 가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중국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사법시험의 합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행되어 그 적용의 시기도 매우 근접하였으므로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사법시험 1차시험과 관련한 가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문17】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④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자가 외국영화에 의한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이 초래되고, 국내 영화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영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둔 것으로, 이를 들어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문18】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방영금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 등을 규제하는 것은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므로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한다.
- ④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없게 하는 것과 일간신문과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신문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구독자가 많은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통제하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하고 부적절하게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19】 다음 중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문20】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로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21】 국가기관간의 권한 분쟁이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의 경우 그 권한 및 준립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②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가 있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
- ④ 국회의 구성원인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문22】 ‘국회 동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대통령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④ 대통령이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대통령은 일반사면을 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23】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 원칙과는 구별된다.
- ②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감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그로 하여금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의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간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직접 적용될 수 없다.
- ⑤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문24】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 ③ 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중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었다.

【문25】 입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경우 그 법률안은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을 발생한다.
- 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발의의원이 필요하다.

【문2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 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 ②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문27】 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보면서, 교수나 교수회는 그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다.
- ② 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③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④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 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문28】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②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접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 ③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5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 ④ 국가는 성질상 집행불능의 상태가 생길 수 없어 국가에 대한 가집행을 불허하더라도 집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 ⑤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용을 수용자라는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문29】 국적이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모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그의 부모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그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④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문30】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인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므로, 해당 집회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한 경우라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②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이므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 ③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④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결국 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영하려는 약사 개인들과 이러한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다.
- ⑤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집회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문31】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 ③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되,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 ⑤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3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정부에 한정되고,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심판의 변론은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행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 ④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은 해산되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 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문33】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하여도 단수면허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문34】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③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문35】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개인의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 ② 입법자는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 학생부나 내신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증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 ③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사범대학의 졸업자가 자기가 졸업한 사범대학이 있는 지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은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⑤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문36】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③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범위는 동일하다.

【문37】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도시 내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등록세를 증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③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④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조세관행존중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 ⑤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장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문3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나.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지만,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할 필요는 없다.

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마.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 ① 가, 나, 라 ② 라, 마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⑤ 가, 나, 마

【문39】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②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피소추자는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 ③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 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문4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아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에게 범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자체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보안관찰처분은 그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절반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 1】 무권대리행위의 주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중원이 중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중중이 사후에 그 중중원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③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 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 ③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④ 낙찰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이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문 3】 공유(共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② 수인이 한체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④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 4】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 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 ④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⑤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문 5】 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⑤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문 6】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 ②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前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지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다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본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순한 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⑤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자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 7】 변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 ②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환청구도 할 수 없다.
- ③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 ④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구두제공의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 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와 대위변제자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문 8】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을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③ 갑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가 이중매매임을 잘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문 9】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
- ②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③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장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장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금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다.
- 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문10】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중구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④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문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금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②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금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정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정할 필요는 없다.
-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민법 제39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금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문12】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② 임대차계약 후 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은,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반하는 임대차기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이다.
- ③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인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문13】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증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③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문14】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 ②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위조의 제척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이 된다.

【문1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건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6】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명의수탁자를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문17】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④ 구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그와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유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
- ⑤ 당사자가 실제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설정계약의 합의가 있어 구등기를 유효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로 한 취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유효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문18】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므로, 위 수증자(受贈者)가 제3자에게 위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증자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문19】 공탁(供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만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다.
- ④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문20】 소멸시효(消滅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손해발생사실을 안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민법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 ④ 부동산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2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②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담보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담보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아니므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 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22】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②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④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문23】 사실혼(事實婚)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 소정의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사실혼관계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반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 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생존 당사자는 채소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문24】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백화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면, 위 주유기는 위 건물에 부속시킨 종물이다.
-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종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도 종물에 해당되어 부동산의 낙찰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낙찰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낙찰인에게 이전된다.
- ⑤ 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된 정화조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고 보다는 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25】 친권(親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대리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성년인 자(子)와 미성년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부모가 할 때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④ 무상(無償)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⑤ 모(母)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父)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와 같이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모가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신고사유에 해당한다.

【문26】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물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도 포함된다.
-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문28】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더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 ③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 ④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문29】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 ②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③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도 준용되므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문30】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
- ②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③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 ⑤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문31】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④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인 경우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나,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3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間に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행하는 심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문33】 다음 중 무효인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받은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 ㉡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첩에게 그동안의 노력 등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위 제3자 명의로 된 대출약정
-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이를 추인한 경우
- ㉤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위 남편 명의로 된 대출약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4】 다음 중 민법상 소급효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 무효행위의 추인, ㉡ 혼인의 취소, ㉢ 상속재산의 분할
-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취득시효의 완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5】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③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낙찰 받은 경우에, 무효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에 의해 위 낙찰은 유효하다.
- ④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36】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경우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 양수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따라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문37】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장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후일 저장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양도하여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수인이 대지에 설정한 저장권의 실행에 의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저장권설정 당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저장권자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한 바가 없다면 양도인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토지에 저장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장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장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장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⑤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문3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이 丙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후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담보목적물을 乙에게 가장 양도한 후 乙이 丙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丙
-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인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 채무인수(債務引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③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자기와 구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0】 유언(遺言)의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민법에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②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설령 그 이후에 발급받아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 ③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그 증인이 되지 못한다.
-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문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수입자동차가 장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규 등록한 경우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분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2】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②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갑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경우, 갑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문 3】 다음 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복권까지 받았다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더라도 누범이 되지 않는다.
- ② 상습절도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더라도 누범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④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입찰방해죄의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 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5】 동산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1,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은 톱밥진동선별기의 소유자인데, A, B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위 기계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위 ㉡의 경우에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 ④ 가, 다, 마 ⑤ 나, 라, 마

【문 6】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7】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도 형법 제370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된다.
- ②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 ④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
- ⑤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제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경계표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②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고 위 2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 ④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가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가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⑤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으로 감금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10】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⑤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1】 범조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범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갖추어야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는 특별관계에 있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범조경합의 관계이다.
- ④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범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범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12】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② 살인죄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국내법원에서 감경 없이 다시 살인죄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 후에 걸쳐 행하여진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면 수수한 뇌물수수액 전체를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필리핀국에서는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우리나라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문13】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에 대한 법의 침해 내용을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 ②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몸에 연소성이 높은 물질을 바르고 라이터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을 때에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때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문14】 다음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의 법정형보다 구법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면 구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를 2죄로 분리하여 각각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뒤늦게 기소된 제1범죄행위는 제2범죄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의 확정판결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 나중에 기소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 기소된 사건과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문15】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농협 판매부장인 A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으로 백미를 외상 판매하다 그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 A가 농협 판매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백미외상거래에 대해서도 부임 직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 거래를 지속하였다면 농협 판매부장 부임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백미외상거래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 B가 갑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갑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 B가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갑 회사의 퇴사 이후의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 C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강도범행을 공모하고 C는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는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 ㉣ D가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D는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D는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 ㉡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전과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협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공무원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7】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갑죄와 을죄 사이의 관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은 2007. 6. 11. 갑죄를, 2007. 7. 24. 을죄를 범하였다.
- ㉡ 피고인에게는 A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제1판결)이 2002. 10. 10. 확정된 전과와 B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판결(제2판결)이 2007. 7. 14. 확정된 전과가 있다.
- ㉢ B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이다.

- ①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모두 제1판결 확정 후의 범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아니지만 모두 제1판결 확정 후의 범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아니므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⑤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와 을죄 사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18】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한 갑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갑죄를 범할 당시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갑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할 수는 없다.
- ㉣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여 금고형으로 처단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기 도박의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갑이 일제시대 사정(査定)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의 상속인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에 그쳐서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범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해제하여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더라도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20】 살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③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살인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강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⑤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문21】 다음 중 불가법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 여부)
-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후행 매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넘는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후행 담보권설정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배임죄 성립 여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문22】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여야 한다.
- ㉢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강제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3】 감금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죄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고,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자발적으로 가거나 그 장소가 잠겨있지 않아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 ②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속한 행위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는 강간미수죄와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한다.

【문24】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학생들의 토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나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도 포함한다.
- 미진 :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 정현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 은정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되어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나,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① 미나와 미진은 옳고, 정현은 옳지 않다.
- ② 미진과 정현은 옳고, 은정은 옳지 않다.
- ③ 정현과 은정은 옳고, 미나는 옳지 않다.
- ④ 미나는 옳고, 은정은 옳지 않다.
- ⑤ 미진은 옳지 않고, 정현은 옳다.

【문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동거하는 이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이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소재사인 저금통을 친구 집에 숨겨 놓은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의 돈을 절취하였다가 그 후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의료인이나 의료병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
- ㉡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 ㉣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속 수행하는 업무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 ㉥ 종종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종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므로 음향(音響)은 유형력에 포함될 수 없다.
- ㉡ 다방 종업원들의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 중 1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범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 외국사절의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숙소에서 나오던 외국사절을 태운 승용차를 발견하고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향하여 연이어 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2개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넷트에 맞힌 행위는 외국사절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므로, 날치기 수범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 절도병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강도병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9】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혹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위 ㉡의 경우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 이른바 편면적 중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문31】 다음 중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내란목적의 살인죄(형법 제88조)
- ㉡ 폭발물사용죄(형법 제119조)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 ㉣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 ㉤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제1항)
- ㉥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3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나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나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 ㉡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3】 절도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그 집에 사람이 있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갔더라도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상습절도미수 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할 수 있다.
-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된다.
-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4】 소송사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A가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A의 행위는 소송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35】 다음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A가 현금카드 소유자인 B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예금 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5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식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문36】 다음 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 ㉡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 토지대장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후불식 전화카드의 경우 전화카드 전체가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 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甲(男子)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乙(女子)을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다면,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9】 주거침입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②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타인의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③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체의 전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
- ④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40】 다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분배하였더라도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다.
-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④ ㉡, ㉣, ㉥
- ⑤ ㉢, ㉤, ㉥